

| 국제 산업보건 동향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발간자료〉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 2011-2015년 산업보건 행동계획 발표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는 2007년 발표된 산업보건을 위한 글로벌 행동계획(GPA) 5대 목표를 바탕으로 “2011-2015 산업보건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서태평양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각 국가의 역할과 국제기구 및 WHO 협력센터가 담당해야 할 임무를 설정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유도방안 등이다.

- 세계보건기구는 2007년 5월에 개최된 제60회 세계보건총회에서 2008-2017 산업보건을 위한 글로벌 행동계획(Global Plan of Action on Workers' Health 2008-2017)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 1)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2) 산업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3) 산업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 4) 행동계획 및 실행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 논의를 한다.
 - 5) 산업보건을 다른 정책 및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태평양지역사무소에서는 2006-2010 산업보건행동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3대 목표를 추진하여 왔다.

- 1)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물리적, 사회정치적 환경을 조성한다.
 - 2)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측정·관리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촉진한다.
 - 3)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상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 각각의 목표에 대하여 개별 국가 및 정부, 관련 국제기구(WHO, ILO), WHO 협력센터 및 관련 기관이 노력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제시하여 구체적 실행을 유도하였다.

-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에서는 새로운 “2011-2015 산업보건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소속국가, 국제노동기구(ILO) 및 산업보건 담당 세계보건기구의 협력센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되었으며, 오늘날 글로벌 경제에서 근로자의 건강 증진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각 국가 차원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 국제 산업보건 동향

-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분류한 6개 지역 중 하나로 해당 지역의 인구는 16억 명에 달해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WHO가 분류한 지역 중 가장 다양성이 뚜렷한 지역으로, 소속국가는 37개국이며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등의 선진국은 물론 중국, 베트남 등 빠른 경제발전이 진행 중인 국가도 포함되어 있다.
- “2011-2015 산업보건 행동계획”의 주요비전은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안전한 작업환경 및 양질의 산업보건서비스를 보장하여 모든 근로자가 건강한 삶을 누리고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서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보건상의 부담 및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음의 세부목표를 실행하여 현저히 줄이고자 하였다.
 - 1)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는 정책적 환경을 조성한다.
 - 2)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유해요소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것을 예방, 최소화하고 통제가 가능하게 한다.
 - 3) 근로자가 건강하게 작업을 수행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역량강화 활동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한다.
 - 4) 모든 근로자가 산업보건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2008-2017 산업보건을 위한 글로벌 행동계획을 주축으로 하는 서태평양지역의 “2011-2015 산업보건 행동계획”
 - 글로벌행동계획(GPA) 5대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목표실행을 위한 각 국가, 국제기구(WHO 및 ILO), WHO 협력센터의 구체적 세부행동계획(우선과제)을 제시하였다.
 - GPA 1 :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정책수단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세부계획 : 의료관계자(요양보호사 등)의 산업보건 증진
석면관련 질환 퇴치

주요 산업현장의 유해요소 통제 및 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
e.g.) 화학물질 노출, 폐질환 등

- GPA 2 : 산업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세부계획 : 업무관련성 사고 및 질병을 예방하고 사업장 내 보건증진을 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GPA 3 : 산업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 세부계획 : 비정형 경제분야(informal economy)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보건서비스를 마련한다.
비정형 경제분야를 포함하는 중소기업에 산업보건서비스의 적용을 확대하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 진단, 측정활동에 대한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업무상질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GPA 4 : 행동계획 및 실행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 논의를 추진한다.
 - 세부계획 : 나노기술과 산업보건

- GPA 5 : 산업보건을 다른 정책 및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 세부계획 : 건설업, 광업, 농업 분야에서 산업보건 위험요소와 업무상질병에 대한 의식을 높인다.

〈출처〉 http://www.wpro.who.int/health_topics/occupational_health/



국제노동기구(ILO), 가사근로자(domestic workers)를 위한 협약 및 권고 채택

2011년 6월 16일, ILO에서 개최된 제 100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가사노동협약”이 채택되었다. 이번에 채택된 역사적 협약을 통해 전세계 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 100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개요(The 100th ILO Annual Conference)

- 개최일자 : 2011년 6월 16일(목)
- 회의 참석자 : ILO 183개 회원국의 대표 470여명

• 국제노동기구는 UN 산하의 국제기구 중 유일한 노사정 3자기구(tripartite organization)로서 정부측 2명, 사업주, 근로자 대표 각각 1명이 대표로 참석한다.

■ 가사노동협약(Convention on Domestic Workers) 및 권고의 채택

- 가사노동협약 제 189호의 채택은 찬성 396표, 반대 16표, 기권 63표로 이루어졌다.
- 가사노동협약 제189호와 함께 가사노동협약 권고 제 201호는 찬성 434표, 반대 8표, 기권 42표로 함께 채택되었다.
-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은 비준국가에 한하여 구속력이 있으며, 권고는 협약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이번 가사노동협약 및 권고의 채택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 후안 소마비아(Juan Somavia) 사무총장은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국제노동기구의 관련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국가에서 해당 협약을 비준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 가사노동협약의 필요성

- 최근 국제노동기구에서 11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가사노동자의 수는 약 5300만 명으로 추산할 수 있으나 가사노동자의 업무환경상 공식집계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수가 1억 명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사노동자 56% 이상은 법정 근로일 수 또는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가사노동자의 45%는 한 주 중 단 하루의 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 가사노동자의 36%는 출산휴가에 대한 법적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등 가사노동자를 위한 보호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사노동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며(미성년자 포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

■ 가사노동협약 채택을 통한 기대효과

- 가사노동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침

- 오랫동안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외 또는 간과되었던 상당수 근로자의 삶과 근로조건 개선의 위한 “전 세계적 결의”를 이끌어 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가사노동협약을 비준하는 국가는 해당 협약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전 세계적인 감시하에 놓이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협약의 내용에 준하는 법과 규정을 갖추도록 압력을 받게 된다. 권고는 협약에 명시된 의무 이행에 대한 실용적인 길잡이가 되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 협약을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가사노동자도 근로자로서 인정받게 되며 여타 근로자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최소한의 보호를 받게된다. 협약의 내용에는 가사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로계약의 조건, 업무형태, 근무시간, 임금지급 방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가사노동자 중에서도 취약계층인 미성년 근로자 특히 거주형 가사노동자(live-in domestic workers)와 이주근로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e.g. 거주형 가사노동자에게 적절한 주거장소와 사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 미성년 가사노동자에게는 연령제한을 두어 학업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주근로자의 경우 다른 국가로 이주하기 전 서면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



| 국제 산업보건 동향

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출산휴가 등 다른 영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누리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마련해 줄 것을 규정하였다.

- 가사노동협약을 비준하기 전 각 국가에서는 현행법 및 규정이 협약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필요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출처〉 http://www.ilo.org/ilc/ILCSessions/100thSession/media-centre/press-releases/WCMS_157891/lang-en/index.htm

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